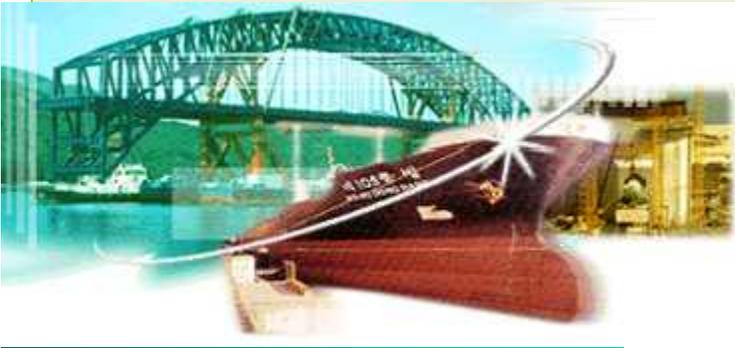




CISG 제3편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2절(제60조) 인도의 수령
제3절(제61조-제65조)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원광대학교

유 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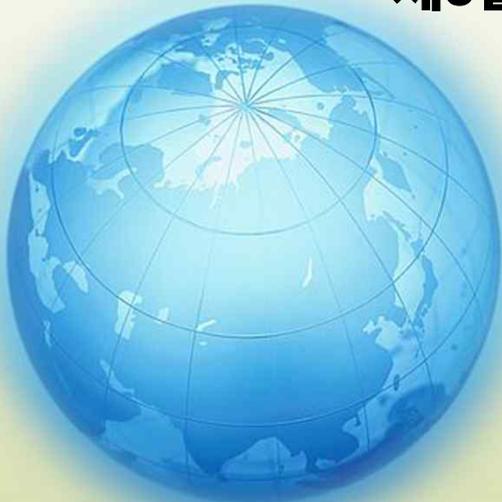
UN물품매매협약

CISG 제3편 물품의 매매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2절(제60조) 인도수령의 의무

제3절 (제61조-제65조)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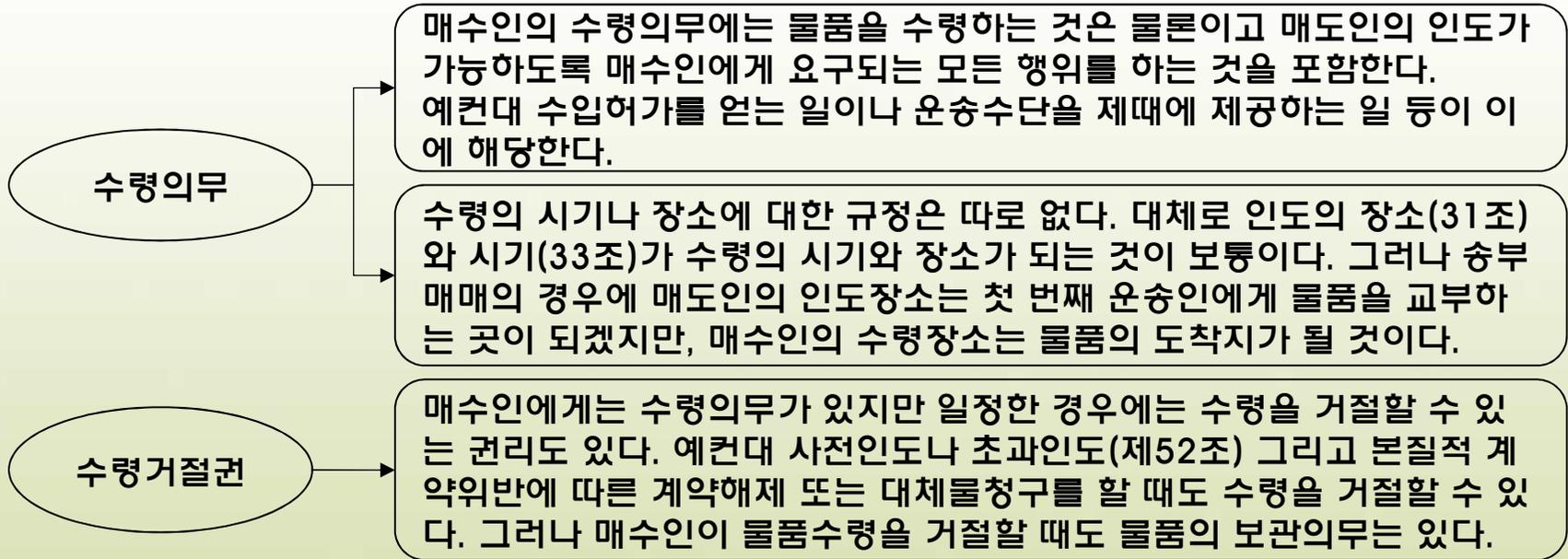


■ 인도수령의 의무(제60조)

매수인의 수령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 (나) 물품을 수령 하는 것

이 조항은 제53조에 언급된 매수인의 수령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물품의 수령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서류의 수령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매도인의 구제방법(제61조)

- (1)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을 할수 있다.
 - (가) 제62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 (나)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 (2)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 되지 아니 한다.
- (3) 매도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시에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부가기간을 설정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제62조), 계약해제권(제64조), 물품명세확정권(제65조)이 있으며, 제 74조 내지 77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이 있다. 이 조항 이외에 매수인에게 부여된 구제수단으로는 제 71조의 이행정지권, 제78조의 이자청구권 그리고 제88조의 자조매각권이 있다.

매도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매수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법원이 독자적으로 또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유예기간을 허용할 수는 없으나 매도인이 스스로 부가기간을 부여할 수는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 매도인의 이행청구권(제62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그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뿐만 아니라 인도의 수령 기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이자지급 또는 협력의무의 이행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양자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행추가기간의 통지(제63조)

-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2)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그 기간 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제62조의 이행청구권을 보충하는 규정이다. 매수인이 제6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설정하여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기간 설정의 중요한 효과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이나 인도의 수령을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하여 부가기간을 설정해 주었는데도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도인이 일단 부가기간을 설정하였다면 그 기간 중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 중이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부가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예컨대 지체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제64조)

(1)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 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가)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나)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①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② 매도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이 조항은 매도인이 언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를 정하고 있다. 매수인의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해제권 역시 그 발생에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발생된 해제권도 제 때에 행사하지 않으면 상실되도록 하고 있다. 국제거래 특성상 가능한 한 해제권 행사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제64조)

본질적
계약위반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이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가기간의
경과

대금지급 의무나 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가기간을 정해주었으나 여전히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금지급 의무에는 대금지급의 준비의무를 포함하며, 수령의무도 수령을 위한 준비행위가 포함된다.

대금지급의무나 수령의무 이외의 기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권행사의
기간

CISG는 원칙적으로 해제권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다는 전제하에서 매도인에게 발생한 해제권은 다음 두 경우에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해제권은 상실한다.

첫째, 매수인이 이행지체 후에 이행을 한 경우. 그 이행사실을 알기 이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알게 된 후에는 해제권을 상실한다. 예컨대 대금지급이나 수령의무, 기타의무의 이행이 지체되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었으나 후에 그 의무가 이행된 경우이다.

둘째, 이행지체 이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을 때부터 합리적 기간이 경과할 때,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을 경과한 경우, 부가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매수인이 명확히 한 때는 해제권을 상실한다.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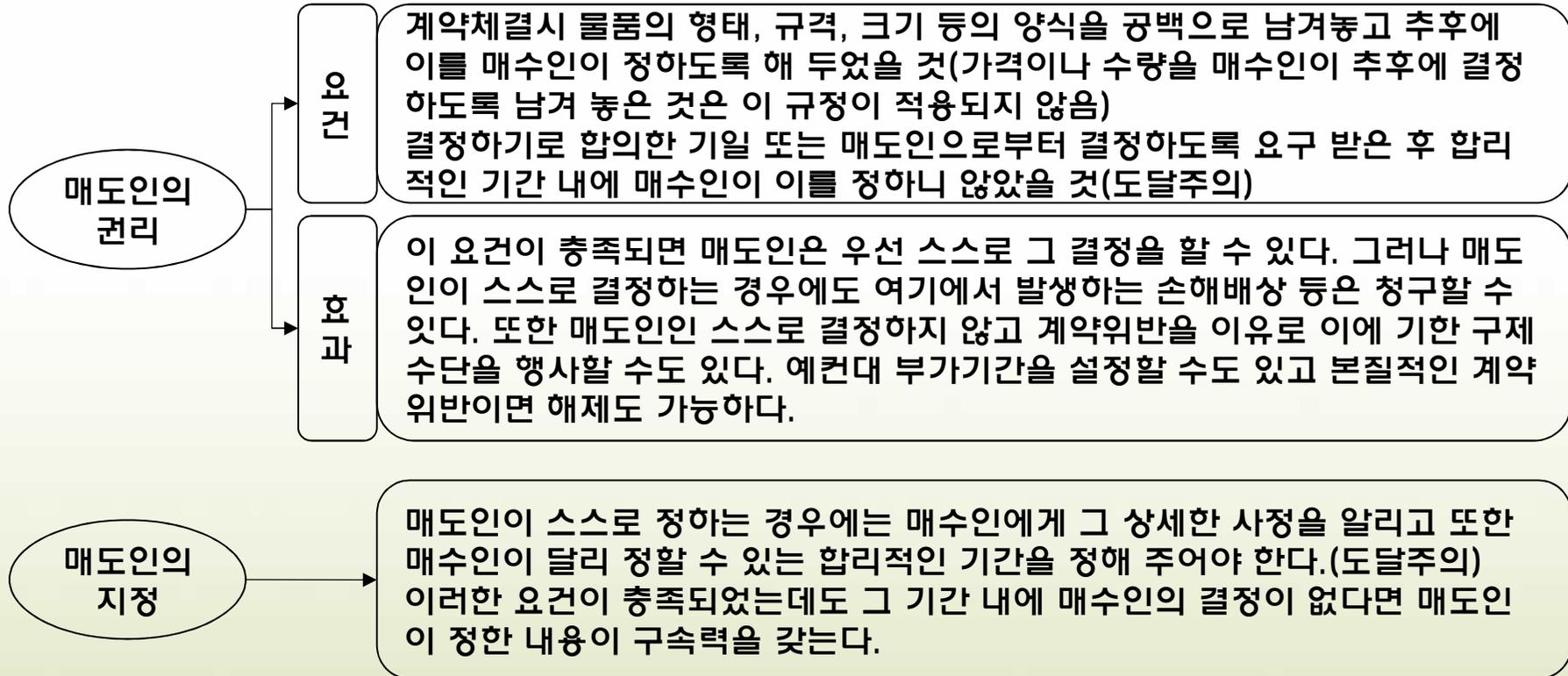
■ 물품의 명세확정권(제65조)

- [1]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 규격 그 밖의 특징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다른 권리를 해함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 [2] 매도인은 스스로 지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그 상세한 사정을 통고하고, 매수인이 그와 다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그 통지를 수령한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다른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정이 구속력을 가진다.

이 조항은 계약에서 물품의 형태, 규격, 크기 등에 대해 정하지 않고 그 결정을 매수인에게 맡겨 놓았는데, 매수인이 결정해주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해 정하고 있다. 특히 매도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에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물품의 명세확정권(제65조)



■ 제6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위험이전의 효과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전의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이전의 또 다른 예외를 제70조에서도 정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위험이전에 대해서는 Incoterms나 관행, 관례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CISG상의 위험이전 규정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예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기위험
의 이전

여기서의 위험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쪽의 형태에도 기인되지 않고 발생한 물품의 우연한 멸실 또는 훼손을 말한다. 예컨대 자연재해나 우연한 사고에 의해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은 물품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이 이전됨으로서 대기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위험이전
의 예외

그러나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보통 계약위반에 해당하겠지만 반드시 계약위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운송조항부 계약품의 위험(제67조)

- [1]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교부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송부매매 시에 위험이 언제 이전하느냐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Incoterms나 관행, 관례에 의해 위험부담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예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단지 원칙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 운송조항부 계약품의 위험(제67조)

송부매매
위험이전

매매계약에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또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을 때는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때 위험이 이전된다.

송부매매에 있어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할 때까지 위험이 이전하지 않는다. 예컨대 매도인 국의 항구에서 물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면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첫 번째 운송인에 의해 항구까지 운송되는 경우에도 그 첫 번째 운송인이 아니라 항구에 있는 두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되는 때 비로소 위험이 이전된다.

이 규정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한 경우는 이 규정이 아니라 제69조가 적용된다.

국제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후에도 여전히 그 물품의 처분권 또는 처분권을 부여하는 운송서류를 작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에도 위험이전의 시기가 늦추어지지 않는다.

특정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수인의 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예컨대 매도인이 석유나 밀 또는 종류물을 여러 매수인을 위해 구분 없이 함께 선적하여 보내는 것이다. 이 때는 비록 운송 중에 물품이 멸실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아직 위험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매도인은 여러 방법으로 매수인의 물품을 특정하게 된다. 예컨대 물품에 표시를 해 둘 수도 있고, 선적서류에 적어 둘 수도 있으며,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통지를 할 수도 있다.(도달주의)

■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제68조)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운송계약을 표창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이 조항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언제 위험이 이전하는가를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체결 시에 이전되지만 예외적으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서류를 발행하는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알았을 때에는 매도인이 멸실 및 훼손의 위험을 부담한다.

■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제68조)

계약체결시
위험이전

운송 중의 물품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위험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에 이루어진다. 특히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계약체결 이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 위험이전 시점에 물품에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운송인에게
교부시이전

그러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서류를 발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 특별한 사정이란 예컨대 매도인이 운송보험을 들어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매수인이 계약체결 이전에도 보험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매도인의
위험부담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음을 매도인이 알았음에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특정

이 규정에는 특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물품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원칙으로 이해되므로 언급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기타 경우의 위험(제69조)

- [1] 제67조와 제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 지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위반을 범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2]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 [3]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물품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제67조의 송부매매와 제68조의 운송 중의 매매 이외에 발생하는 위험이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매도인영업
소에서인도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 때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수령을 지체할 때는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시점에 이전된다.

그 외의장
소에서인도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첫째, 인도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둘째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졌으며, 셋째 그 사실을 매수인이 안 경우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예컨대 창고업자에게 맡겨져 있는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 제3국의 항구에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또는 매수인의 주소지에서 인도하기로 한 경우 등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 매도인의 계약위반시의 위험(제70조)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제 7조, 제8조 및 제69조는 매수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구할 수 있는 구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위험부담과 계약위반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만 다루고 있으며, 비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실질적 의미는 계약해제 및 대체를 청구와 관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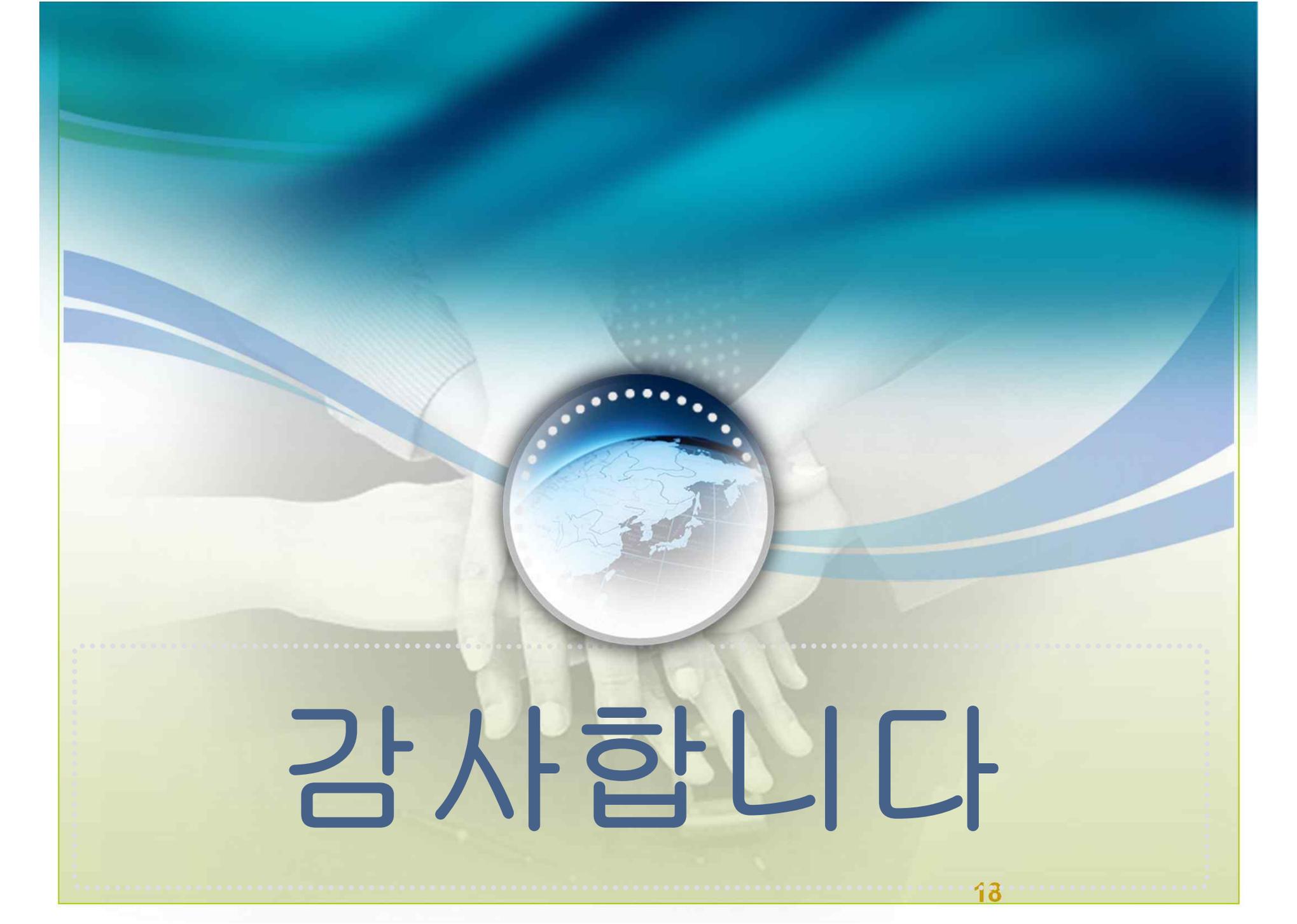
이 조항은 매도인에게 본질적 계약위반이 존재한다면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더라도 계약해제의 가능성이 매수인에게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시

위험이전 기 이전에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하였다면 비록 위험이전 후에 물품이 우연히 멸실 또는 훼손되었더라도 매수인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기한 모든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비본질적
계약위반시

비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즉, 위험이전 이전에 매도인이 비본질적 계약위반을 하였고, 위험이전 이후에 물품이 우연히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면 매수인은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위험은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진다.



감사합니다